

## 검 토 보 고 서

(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)

- 전문위원 원의회 입니다.
- 의안번호 제 671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먼저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2008. 10. 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· 의결 공포되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, ±20% 범위에서 자치단체심의회가 탄력적으로 결정 함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하며
-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는 11월 3일, 2차 회의 11월 18일 거쳐 11월 28일 3차 회의에서 연간의정비 37,620,000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.

-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월정수당 월 2,697,900원 을 월2,035,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안부기준 범위내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음은 울산광역시 및 타 구 군의 의정비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  
울산광역시의회는 연간 5,538만원으로 동결하였으며,  
울주군의회는 잠정액 3,872만원, 남구의회는 4,063만원으로  
결정 되었으며, 동구의회는 잠정액이 3,841만원이며,  
북구의회는 3,887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